

NCS 직무 기술서(일반직6급/경영행정)

직무분야	경영행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분류체계	02. 경영·회계·사무	01. 기획사무	01. 경영기획	01. 경영기획
		02. 총무·인사	03. 일반사무	02. 사무행정
기관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R&D 특성에 따라 R&D 단계별 IP전략 지원과 R&D 전주기 통합 지원이라는 2-Track으로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특허기술 조사 분석, 특허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IP-R&D 전략지원 등 R&D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수행 			
직무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기획)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관리 및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보조 (사무행정) 조직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기획) 01. 사업 환경 분석, 02. 경영 방침 수립, 03. 경영 계획 수립, 04. 신규 사업 기획, 05. 사업별 투자 관리, 06. 예산 관리, 07. 경영실적 분석, 08. 경영 리스크 관리, 09. 이해관계자 관리 (사무행정) 01. 문서작성, 02. 문서관리, 03. 자료관리, 04. 회의운영·지원, 05. 사무행정 업무관리, 06. 사무환경조성, 07.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기획) 조직의 경영 이념과 경영 철학, 핵심가치 체계 및 전사 목표에 대한 개념,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 경영목표 설정 등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지식, 재무 및 관리회계 지식, 예산편성 및 조정 지식, 예산 계획 대비 실적 분석 지식, 경영실적 측정 지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대한 지식, 정부 정책·법규 동향 (사무행정) 문서작성·관리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이해, 자료정리 분류, 문서대장 관리, 회의 운영방법, 업무전달 프로세스, 비품·소모품 관리규정, 사무환경 관리규정 등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기획) 경영환경 분석 능력,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 기술, 핵심가치·자산 및 역량에 대한 분석 능력,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능력, 예산 편성 및 관리 적용 기술, 체계적 성과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술,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 처리 및 분석 능력, 경영 정보 시스템 활용 능력, 고객 분석 및 환경 분석 능력, 정부 정책 분석 능력 (사무행정) 문서기안 능력, 자료검색 능력, 문서배포 능력, 회의 운영 계획 능력, 업무 전달 능력 등 			
직무수행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환경 변화 내용에 대한 분석적 검토 자세 등 전략적 사고, 성과 측정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 노력, 성과 측정 기준 수립을 위한 체계적 사고, 수리적 정확도를 확보하려는 자세, 개선 방안 도출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 자세 업무 규정, 정부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 의지 구성원 간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적 태도 및 이해관계자 지향적 마인드 공정한 업무수행 노력, 투명한 정보공개 자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관리에 대한 의지 			
관련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SQLD, 지식재산능력시험 등 			
직업기초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참고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NCS 홈페이지(www.ncs.go.kr) → NCS 및 학습모듈 검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www.kista.re.kr) 			

NCS 직무 기술서(일반직6급/사업행정)

직무분야	사업행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분류체계	01. 사업관리	01. 사업관리	01. 프로젝트관리	02. 프로젝트관리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 법률	02. 지식재산관리	03.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기관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대학 및 공공(연)의 R&D 특성에 따라 R&D 단계별 밀착 지원 및 R&D 전주기 통합 지원, 특허기술 조사 분석,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특허로 R&D 전략 지원 사업(舊IP-R&D 전략지원) 등 R&D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수행 			
직무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실행 계획, 이행 절차, 종료 등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지원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거나 이를 통해 객관적 정보와 목적에 따른 합리적 판단 근거를 제시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관리) 01. 프로젝트 전략기획, 02. 프로젝트 통합관리, 03.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관리, 04. 프로젝트 범위관리, 05. 프로젝트 자원관리, 06. 프로젝트 일정관리, 09. 프로젝트 품질관리, 15.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03. 지식재산 정보검색, 05. 지식재산 자료정리, 06. 지식재산 정량분석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 관련 각종 보고서에 대한 지식, 프로젝트 진행 절차 및 계약 관련 지식,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식, 관리 방법론에 대한 지식, 타당성 검증 기준에 대한 지식, 품질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 성과 분석 및 평가 관련 지식 등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국·내외 특허 문헌, 특허 데이터베이스별 특성, 국가별 특허 제도 및 법령, 자료구조, 특허 분류체계, 출원인 및 발명자에 대한 지식, 공개 및 등록 절차, 자료계산 방식, 분류 체계에 대한 지식, 통계분석 방법, 특허지수분석 방법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 작성 능력, 관련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파악 및 의사소통 능력, 자료 조사 및 분석 기술, 진행에 필요한 자원 파악 및 프로세스 점검을 통한 예방 조치 능력, 성과 측정 및 분석 능력, 관련 과업 일정 관리 및 모니터링 능력, 작업 기간 및 자원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별 연산자 활용 기술, 분석 툴 활용 기술, 자료 유사성 및 오류 판단 능력, 스프레드시트 작성·활용 기술,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통계분석 능력, 특허지수분석 능력, 다양한 통계분석 항목 분석 능력, 특허정보를 통한 지수 분석 능력, 정량분석 결과 해석 능력, 분석결과 종합 능력 			
직무수행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경청 자세, 체계적·분석적 사고, 정보와 기업 이슈, 동향에 대한 관심, 지침 및 규정에 대한 준수 자세,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자세, 피드백에 대한 수용 자세,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 주의 깊은 관찰 태도, 사업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계획수립을 위한 논리적 사고, 정확하고 세심한 검색 및 자료 정리, 최적성과 산출 의지 			
관련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SQLD, 지식재산능력시험 등 			
직업기초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참고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www.kista.re.kr) 			

NCS 직무 기술서(전문직 “가” 급/기술분야 공통)

직무분야	지식재산분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분류체계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 법률	02. 지식재산관리	03. 지식재산정보 조사분석
기관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및 전문기관, 기업·대학, 공공(연)의 R&D 특성에 따라 R&D 단계별 밀착 지원 및 R&D 전주기 통합 지원, 특허기술 조사분석,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IP 기반 전략지원 등 R&D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수행 			
직무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내외 자료와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지식재산 R&D 전략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업무 수행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 지식재산 정보검색, 04. 지식재산 유효자료 선별, 05. 지식재산 자료 정리, 06. 지식재산 정량분석, 07. 지식재산 정성분석, 08. 지식재산 개발방향 수립, 09.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수립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기술 전문 용어 및 기술 특성 지식, 국내외 지식재산 문헌에 대한 지식,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별 특성, 통계 및 특허 지수 분석 방법, 대상 기술의 기술·출원인·목적·효과별 분류 지식, 주요 국가별 지식재산 제도, 해당 분야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 관련 국외 문헌 및 정보자료에 대한 외국어 독해능력, 검색 프로그램 사용 및 활용 기술,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제도 해석 및 적용 능력, 자료 분석 및 결과 해석 능력,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S/W) 활용능력, 지식재산 정보 검색 및 자료 분류 기술, 특허지수 산출 및 분석 능력, 핵심기술 선별 능력, 스프레드시트 작성 및 활용 기술 			
직무수행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심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 태도, 합리적 업무 수행을 위한 논리적 사고, 다양한 분석 방법론 검토 자세, 조직 구성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태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 			
관련 자격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 변리사, 기술사, 특허정보분석 관련 자격증 등 			
직업기초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참고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NCS 홈페이지(www.ncs.go.kr) → NCS 및 학습모듈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www.kista.re.kr) 			

별첨 2 자격요건 공통사항

□ 우리원 인사규정 제6조(채용자격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별첨 3

우대사항(가산점 부여 기준)

□ 우리원 인사규정 제6조의 2(채용 우대)

적용대상	자격기준	전형단계 적용 (만점의 %)			증빙서류
		서류	필기*	면접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5%~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전형별 5%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확인서(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증명서 추가제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수의 구성원	-	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	-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2%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2%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경력단절여성	접수마감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경력단절여성 의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경력단절여성 가점부여 기준] 1) 여성으로서 2)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3) 공고마감일 기준 건강보험 등 증명서상 직장이력이 6개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	2%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2%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이전지역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에 따른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2%	2%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필기전형 中 필기시험(NCS 기초능력검사) 종합점수에 한함

※ 채용우대 가점은 전형 단계별로 합산하며,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별첨 4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범위

※ 아래 참고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령 등이 우선됨

<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의 정의 >

①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② **이전지역 인재**: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의 “학과정보(대학별 학과정보)-학교명” 검색을 통해 학과별 대학 유형 및 소재지 확인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여부는 해당 학교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그 외 제2캠퍼스는 미해당) 등

< 예 시 >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가 아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 하는 지역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이전지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인재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및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 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 예정(공고접수마감일 기준)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이전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학교 제외 대상**

-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 **그 외 이전지역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지역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1 >

<이전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인재가 아닌 경우>

- 경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재 대학교에 3학년 재학·휴학중인 자

<이전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인재인 경우>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특별시 대학교에 2학년 재학·휴학중인 자

< 예 시 2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 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경찰대학·공군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 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 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입사지원서 앞단의 인적사항 입력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아래의 **블라인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평가에서 **감점,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위반) 입사지원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작성 시 **성별, 연령, 학력,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종교 등 인적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고의 유무, 위반의 경중 등을 불문
 - 경험·경력사항과 관련한 직장명은 기재 가능(단, **경력기관이 학교일 경우 블라인드 처리할 것**)
 - **교육수료, 자격증 및 면허, 경력 및 경험, 수상 실적** 작성 시 블라인드 항목에 유의하여 작성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경험·교육을 수료하거나 수상한 경우** 등은 블라인드 처리할 것)

항목별 위반사항 예시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할 것)

블 라 인 드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후 남편/아내와~ - 육아휴직을 통해 자식에 대한 어머니/아버지의 책임을 알게~ - 총여학생회 활동을 ~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교육을 수료하고~ -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전문여성인력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의 남아(딸)로 ~ - 군 복무(운전병, 행정병, 관리병, 전경, 의경 등) 시절~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하며 ~ - 언니/ 오빠/ 누나/ 형과 함께 ~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에 태어나 ~ - 오십 넘게 살아오며 ~ - 88 올림픽(2002년 월드컵)이 개최된 해에 태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대학교에 입학 ~ - 2002년 만 29세 ~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졸업 후 ~ - 석사(박사) 졸업 후 ~ <p>※ 전문직“가”급 지원자에 한하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은 블라인드 미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시 ~ - 석사(박사) 논문을 준비하며 ~
	출신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대학교를 졸업하고 ~ - 한국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금 수여 (장학생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대학교 동아리 활동 ~ - 학교 영문 약어 사용 - 응시원서 접수 시 학교이메일 사용
	출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서 태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녔으며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가이신~, 자영업을 하시는~, 농사를 지으시는~ - 고위공무원이신 아버지(삼촌, 이모)를 따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이신 어머니의 교육을 받아~ - 홍길동(특정인 이름)의 아들로서 ~ <p>※ 가족 직업, 가족관계 등 노출 금지</p>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 성가대 활동을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적부터 매주 “성당”에 나가~

- (불성실 기재) 특정문자 반복 기재, 내용 붙여넣기, 타 기관명 사용 등
- (공정성 저해) 직무능력소개서에 특정인 이름(성명) 언급

항목별 위반사항 예시(참고)

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문자 반복 기재 또는 의미해석이 불가인 경우 예시) 특수기호, 자음/모음 등(ooo, LLLL 등) - 질문의 의도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예시) 앞/뒤 질문과 동일한 내용 붙여넣은 경우 예시) 질문과 동떨어진 내용 기재한 경우 - 항목별 동일한 답변 기재한 경우 - 타 기관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능력소개서에 본인 성명, 가족 성명 등을 기재한 경우

서류전형 평가 기준표

구분	배점	내용	
직무수행능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설명서에 따른 필요지식·기술과 관련한 교육의 정도는 충분한가? ·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역량(자격,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직업 기초 능력	지원 동기 (포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동기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 지원동기가 기관의 비전이나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가? · 지원포부가 현실적이며, 채용 분야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가?
	경력 및 경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의 경력 및 경험 활동이 지원분야와 관련성이 있으며, 차별화된 역량을 잘 기술하였는가? · 지원자의 경력 및 경험 활동이 기관의 조직 특성과 업무 절차를 이해하거나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충분한가? · 지원자의 경력·경험 활동이 향후 수행직무는 물론 기관의 발전을 꾀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정도로 충분한가?
	의사 소통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였는가? · 기술된 의사전달 방식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 · 제시된 사례나 근거가 논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문제 해결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도출 과정에 대한 기본 항목(문제 원인 도출, 해결 방안 탐색, 해결 방안 선정)이 빠짐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 문제해결도출 과정이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와 함께 기술되어 있는가? · 문제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대안이 창의적인가?

면접전형 평가 기준표

구분	배점	세부내용
직업 기초 능력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적인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가? · 주제 또는 문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 및 분석 능력을 갖추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 탐색, 해결 과정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창의적·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가?
직무 수행 능력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관련 지식(전문 용어 및 정보 활용)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가?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및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가?
직무 인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의 경력·경험 활동이 조직 및 수행 직무와 관련성이 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의 경력·경험 활동이 수행 직무는 물론 기관의 발전을 꾀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정도로 충분하고, 지속적인 혁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수행 태도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감과 열의의 수준이 적절한가? · 가치 있는 발상과 개성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 업무에 대한 Devotion(헌신), Passion(열정), Action(추진력)이 있는가?

□ **제공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① 입사지원 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 확인
- ②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③ 증빙서류와 편의지원 사항 일치 확인 후 개별 안내

□ **유의사항**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연장 항목은 장애인 제한경쟁 시험에만 적용됩니다.
-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25.7.8.)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 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하는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편의지원 신청 당시 장애정도와 응시예정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의 장애정도가 다를 시에는 편의 지원 제공 내역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증빙서류(필기전형)

장애유형(장애정도)		편의제공 내용	증빙서류	비 고		
지체장애	상지	중증	• 시험시간 1.5배 연장 • 확대문제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기존 1~3급		
		경증	• 확대문제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기존 4~6급		
	하지	중증·경증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인증명서 기존 1~6급		
뇌병변장애	중증		• 시험시간 1.5배 연장 • 확대문제지 제공	장애인증명서 기존 1~3급		
	경증이나,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확대문제지 제공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기존 4~6급		
	경증		• 확대문제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시각장애	중증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확대문제지 제공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축소문제지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확대문제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기존 3급 1,2호		
	경증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확대문제지 제공 • 축소문제지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시력 또는 시야값 명기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확대문제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존 4,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기존 5급 2호	
		두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확대문제지 제공	기존 6급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청각장애	중증·경증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기존 2~6급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증빙서류(면접전형)

장애유형(장애정도)		편의제공 내용	증빙서류	비 고
지체장애	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인 증명서	-
	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도우미 지원 ·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 관련서식 확대 제공 		
뇌병변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도우미 지원 ·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인 증명서	-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인 증명서	-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보청기 등) 착용 허용 ·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

' 별첨8. 장애인 등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입사지원서 시스템 內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지원분야			
성명		연락처(H)	
장애유형		장애등급(정도)	

2. 편의제공 신청내용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 서류'를 참고하여,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 편의제공이 필요한 전형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전형구분	신청 (체크표시)	편의제공 요청항목	편의제공 필요성
필기전형	<input type="checkbox"/>		
면접전형	<input type="checkbox"/>		

신청일 : 2000. 00. 00.
신청자 : (서명)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첨 10 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

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

공고 번호		지원 분야	
접수 번호		이메일 주소	
성 명		휴대폰 번호	
이의 단계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사실 관계	일시, 장소, 대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사유(이유,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사항	이의 신청에 따른 세부 요청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유의 사항

1. 채용 전형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 신청 사항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육하원칙에 의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회신은 상기에 기재된 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4. 불합격 이의 신청 외의 문의 사항은 답변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실 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6.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